

아리야리! 정선
the mecca of arirang, jeongseon

정 선 군

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<http://www.jeongseon.go.kr/>

제570호 2021. 6. 25. (금)

【조 례】

- 정선군 조례 제2824호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……………1

□ 발행 : 정선군청 기획관 (전화:560-2213, FAX:560-2592)

조 례

제274회 정선군의회(2021. 6. 11.) 및 제6회 조례·규칙심의회(2021. 6. 25.)에서 의결된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1년 6월 25일

정 선 군 수

정선군 조례 제2824호

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”을 “문자해득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학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”을 “사회적·경제적·문화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문자해득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, 강연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3.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
4.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
5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성인문해교육”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<u>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, 가정·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 략)</p> |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문자해득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대상) 성인문해교육은 <u>학 령기 동안 교육 받을 기회를 놓 친 정선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 다)에 거주하는 비문해·저학력 성인</u>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, 성 별, 직업 등을 불문한다.</p> | <p>제3조(대상) ----- <u>사회적 · 경제적 · 문화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문자해득 능력을 개발하 지 못한</u>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군수는 성</p> | <p>제7조(경비의 지원) ① -----</p> |

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----- 다음 각 호 -----

1.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
2.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, 강연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 등

3.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

4.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

5.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

② (현행과 같음)

□ 제안이유

-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비 지원 사항 등을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 지원사항을 규정 (제7조)
 -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
 -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, 강연, 학술회의, 학습동아리 활동
 -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
 -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
 -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